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고객지원국<br>정보고객정책과                  | 과 장 전현진<br>사무관 박성철 | 042-481-5460<br>042-481-5716 |
|  | 2018년 1월 15일(월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‘특허 받아야 말짱 도루묵’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.

[내일신문 '18. 1. 15.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]

### [기고내용]

- 우리청이 청구항마다 가산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시 많은 수의 청구항 작성이 어려워 부실특허가 양산
-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미부과
-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특허를 받으면 하나의 특허마다 동일한 특허료를 납부

### [설명자료]

- 청구항 수가 증가할수록 총 수수료(출원료, 심사청구료, 등록료)가 증가하는 것은 미국, 일본,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동일함
- 각 국가는 출원단계 또는 등록단계에서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어느 단계에서 운영할 지는 각국의 정책적 판단 사항임
- \* 출원인이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를 출원단계 또는 등록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부담하는지의 차이가 있음
- 그럼에도 기고자는 출원단계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는 언급하지 않은 채 등록단계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만을 비교하고 있음

<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가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 운영 현황 >

| 구 분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우리나라 | 일본 | 중국     | 미국     | 독일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출원<br>단계 | 출원·<br>심사청구료 | 기본료  | ○    | ○  | ○      | ○      | ○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항가산료 | ○    | ○  | ○(10항) | ○(20항) | ○(10항) |
| 등록<br>단계 | 등록료          | 기본료  | ○    | ○  | ○      | ○      | ○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| 항가산료 | ○    | ○  | X      | X      | X      |

○ 한편, 우리나라는 미국, 중국 등에 비해 등록유지 기본료를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, 특히 1건당 총 유지비용은 우리나라가 더 낮음

\* 20년 유지시 등록료(9항/17.12.) : 우리나라 1,148만원, 미국 1,449만원, 독일 1,688만원

□ 기고자가 주장하는 부실풍허의 문제는 청구항 수 보다는 연구개발(R&D)의 수준, 명세서나 청구항 작성 품질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,

- 단순히 청구항 가산료 제도 때문에 부실풍허가 양산된다고 볼 근거는 없음
- 우리나라와 동일한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는 이로 인해 부실풍허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고 있음

□ 한편,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은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게 되면, 개인·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\*

\* 우리 청 「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」('17. 3.)

< 청구항 가산제도 폐지시 권리주체별 출원·등록 비용 변화 >

| 구분   | 평균 청구항수 | 현재 20년 유지비용(A) | 폐지시 20년 유지비용(B)  | 차액(B-A)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개인   | 5       | 859만원 (774만원)  | 1,207만원(1,077만원) | 348만원(303만원) |
| 중소기업 | 6       | 946만원 (850만원)  |                  | 261만원(227만원) |
| 대기업  | 10      | 1,293만원        | 1,207만원          | △87만원        |
| 외국기업 | 15      | 1,727만원        |                  | △520만원       |

\* 폐지시 평균청구항수(9항)을 기본료에 반영한다는 전제

\*\* ( )는 현재 개인,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한 금액